

의안번호	제865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5
----------	-----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김성대 · 이정범 · 유상용
김정일 · 박병천 · 박봉순
박진희 의원

1.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2015년 제정된 이후,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조례에 사용되는 문구로 수정, 표기법 정리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및 정규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표기 방법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 다. 휴식을 취할 권리 삭제(안 제5조)
- 라. 학습환경 조항 표기 방법 변경(안 제6조)
- 마. 청원의 권리 조항 문구 수정 및 표기 방법 변경(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를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로,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을 “따라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로, “자녀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자녀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 활동을 말한다.
5.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이란 제4호에 따른 모든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의 호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감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제2호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①”를 “1.”로 하고, 같은 호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3.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
· 무형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생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쾌적하고 편안한 정규교육과정외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에 적절한 조명과 통풍, 냉·난방,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청원할 수 있다.
2.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제한에 관하여 청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청원자는 청원과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u>근거하</u> <u>여</u>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u>대한</u>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 의 자녀교육권 <u>보장에 이바지함</u> <u>을</u>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따라 ----- ----- 대해----- ----- -----을 보장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학습권 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의미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 학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3.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 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4.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 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 을 의미한다. 5.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제2조(용어의 정의) ----- ----- 뜻은 -----. 1. ----- ----- ----- 말한다. 2. ----- ----- 말한다. 4. ----- ----- ----- 말한다. 3. -----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에 따른 ----- -- 말한다. 5. -----

선택권”이란 제3호의 학습참여
여부 등에 대한 학생의 자유로
운 선택과 결정을 의미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규교육과
정외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4조(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① · ② · ③ (생략)

제5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 ② · ③ (생략)

제6조(학습환경)

① · ② (생략)

제7조(청원의 권리)

①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의 제한사
항에 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청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 제4호에 따른 모든 학습
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
하여 해당 학생이 학습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2. · 3. (표기방법 변경)

제4조(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1. · 2. · 3. (표기방법 변경)

<삭 제>

제6조(학습환경)

1. · 2. (표기방법 변경)

제7조(청원의 권리)

1. -----
-----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

2. · 3. (표기방법 변경)

제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제목개정 2022. 12. 27.]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2021. 7. 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2. 3. 21.]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보장에 관한 책무와 권리를 규정한 조례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재정복지과 도숙희